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96호 2021. 7. 12.(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1-99호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2
남해군 고시 제2021-100호	양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4
남해군 고시 제2021-101호	소규모 위험시설 금전2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실시계획 고시	6
남해군 고시 제2021-102호	소규모 위험시설 세정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실시계획 고시 ...	9
남해군 고시 제2021-103호	지적기준점(도근점)성과 폐기 고시	12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936호	도시계획도로(중로3-4호, 남해공용터미널 옆)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8
남해군 공고 제2021-93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21
남해군 공고 제2021-943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2
남해군 공고 제2021-951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52
남해군 공고 제2021-956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55
남해군 공고 제2021-972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57
남해군 공고 제2021-979호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58
남해군 공고 제2021-981호	지명제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64
남해군 공고 제2021-987호	남해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꽃별테마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67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봉천 외 8개 지방하천(14개소)
2.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3.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4. 점용목적 : 취수보 및 양수시설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5-1번지(입현취입보)외 13개소
6. 점용면적 : 총 1,325㎡
7. 점용기간 : 2021. 6. 25. ~ 2026. 6. 24.

남해군 고시 제2021 - 99호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고현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3. 위 치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일원
- 4.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어울림문화센터 조성(연면적: 661.41㎡, 지상 2층 1동)
 - 회전교차로 조성: 회전교차로 조성 및 아스콘 포장
 - 지역경관개선
 - 문화특화가로 조성: 보도포장, 우수관로 신설, 가로등 정비, 버스승강장 설치 등
 - 1070스토리가로 조성: 아스콘 포장(778㎡), 화단조성
 - 진입경관특성화: 벽면부 경관개선, 소규모 공원조성, 조형물 설치
 - 전선지중화: 고압(L=764m) 및 저압관로(L=354m) 매설 등
 - 지역역량강화계획
 - 주민교육·컨설팅·정보화 구축 등

5. 총 사 업 비 : 6,320백만원(국비 4,144, 지방비 2,176)
6. 사 업 기 간 : (당초)2017년 ~ 2021년6월 ⇒ (변경)2017년 ~2021년 12월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시행계획(변경)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4)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1 - 100호

양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3.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벽련, 두모, 소량, 대량마을)
- 4. 주요사업내용 : “변경없음”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 마을회관
[건축] 건축 1동(A=330㎡), 비품설치 1식
 - [토목] 진입로, 주차장, 운동장 각 1개소, 부지조성, 조경식재, 휴게 및 안전시설 각 1식
 - 대량마을진입로확포장 : L=110m, B=6.0~8.0m
 - 소량마을 안길정비 : L=85m, B=4.0m

○ 지역경관개선

- 소량경관공원조성 : 부지조성 22,124㎡, 산책로 정비 490m(흑콘크리트 포장), 휴게시설 1식
- 벽련마을진입로정비 : 안전난간 124m, 노폭확장 100m, 교행로 2개소
- 두모야생화꽃길진입로정비 : 도로확포장 L=415m, B=5m
- 안내판설치 : 1식

○ 지역역량강화계획(변경없음)

- 교육 및 견학, 홍보 및 컨설팅, 정보화 및 마을경영 각 1식

5. 총 사 업 비(변경없음) : 4,200백만원(국비 2,940, 지방비 1,260)

6. 사 업 기 간(변경) : (당초) 2014년 2월 ~ 2021년 6월 → (변경) 2014년 2월~ 2021년 12월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1 - 101호

소규모 위험시설 금전2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실시계획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금전2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1. 실시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금전2교 위험교량 재가설
- 사업위치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274-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위험교량 재가설 1식(L=11.4m, B=7m)
- 사 업 비 : 394백만원(공사비, 보상비 등)
- 사업효과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 시 행 자 : 남해군수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2.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물건(토지) 또는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3. 설계도서(위치, 예산서 등 포함) : 남해군 건설교통과 비치(열람 가능)

4. 연차별 투자계획

사 업 명	구분	합계	'21년 추진	비 고
금전2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백만원)	394	394	
	도비 (특별교부세)	197	197	
	군비	197	197	

5. 정비사업 준공 후 계획(법 제10조 제6항)

○ 공사개요, 시행자의 명칭,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지형도면을 공보에 고시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건설교통과(055-860-33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순위	읍면	지번 (편입)	지목	면적		소유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상주면 상주리	2196	천	44,802	68		국토교통부
	상주면 상주리	1274-1	답	1,180	37	서울 용산구 이촌동	유세0
	상주면 상주리	1274-2	도	89	2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최정0
합계				46,071	131		

남해군 고시 제2021 - 102호

소규모 위험시설 세정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실시계획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세정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1. 실시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세정교 위험교량 재가설
- 사업위치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250-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위험교량 재가설 1식(L=13.5m, B=7m)
- 사 업 비 : 324백만원(공사비 등)
- 사업효과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 시 행 자 : 남해군수
- 사업기간 : 2021. 7. ~ 2021. 12.

2.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물건(토지) 또는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3. 설계도서(위치, 예산서 등 포함) : 남해군 건설교통과 비치(열람 가능)

4. 연차별 투자계획

사 업 명	구분	합계	'21년 추진	비 고
금전2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백만원)	324	324	
	도비 (특별교부세)	162	162	
	군비	162	162	

5. 정비사업 준공 후 계획(법 제10조 제6항)

- 공사개요, 시행자의 명칭,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지형도면을 공보에 고시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건설교통과(055-860-33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순위	읍면	지번 (편입)	지목	면적		소유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상주면 상주리	1226-3	도	1,342	5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5-13	도	626	28		국토교통부
	상주면 상주리	1245-2	도	245	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82	천	37,796	69		국토교통부
합계				40,009	150		

남해군 고시 제2021 - 103호

지적기준점(도근점)성과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이 폐기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일

남 해 군 수

- 지적기준점성과 폐기 고시현황
 - 폐기 지적기준점(도근점) 수 : 269점(남해읍, 이동면 일원)
 - 폐기 지적기준점(도근점) 내용 : 붙임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860-30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폐기 지적기준점 현황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원점	Y좌표	토지소재지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1	도근점	30	지역	중부	149691.06	281588.13	남해읍 북변리 597	폐기	2021.06.30.
2	도근점	32	지역	중부	149539.18	281598.38	남해읍 북변리 290-2	폐기	2021.06.30.
3	도근점	33	지역	중부	149462.88	281596.61	남해읍 아산리 388-4	폐기	2021.06.30.
4	도근점	36	지역	중부	149256.67	281612.93	남해읍 북변리 176-2	폐기	2021.06.30.
5	도근점	41	지역	중부	148903.42	281638.46	남해읍 서변리 81-2	폐기	2021.06.30.
6	도근점	42	지역	중부	148769.36	281649.12	남해읍 서변리491-2	폐기	2021.06.30.
7	도근점	54	지역	중부	149225.9	282178.55	남해읍 북변리 370	폐기	2021.06.30.
8	도근점	55	지역	중부	149371.12	282154.63	남해읍 북변리 340	폐기	2021.06.30.
9	도근점	58	지역	중부	149853.65	282112.71	남해읍 북변리 456	폐기	2021.06.30.
10	도근점	77	지역	중부	148935.28	281868.15	남해읍 남변리 445-3	폐기	2021.06.30.
11	도근점	78	지역	중부	148924.3	281905.86	남해읍 남변리 327-2	폐기	2021.06.30.
12	도근점	80	지역	중부	148925.7	281998.48	남해읍 남변리 257-1	폐기	2021.06.30.
13	도근점	85	지역	중부	148934.44	281911.95	남해읍 남변리 332-1	폐기	2021.06.30.
14	도근점	88	지역	중부	149032.55	281889.19	남해읍 남변리 195	폐기	2021.06.30.
15	도근점	89	지역	중부	149118.56	281886.57	남해읍 북변리 76-1	폐기	2021.06.30.
16	도근점	124	지역	중부	149138.7	280999.33	남해읍 아산리 434-4	폐기	2021.06.30.
17	도근점	133	지역	중부	148869.21	281340.99	남해읍 서변리 272	폐기	2021.06.30.
18	도근점	134	지역	중부	148871.94	281458.52	남해읍 서변리 282-1	폐기	2021.06.30.
19	도근점	155	지역	중부	149022.51	281461.1	남해읍 서변리 300-3	폐기	2021.06.30.
20	도근점	156	지역	중부	149030.93	281425.58	남해읍 서변리 315	폐기	2021.06.30.
21	도근점	157	지역	중부	149039.05	281391.39	남해읍 서변리 315	폐기	2021.06.30.
22	도근점	158	지역	중부	149049.17	281364.76	남해읍 서변리 318-3	폐기	2021.06.30.
23	도근점	159	지역	중부	149062.05	281336.37	남해읍 서변리 321-4	폐기	2021.06.30.
24	도근점	166	지역	중부	149194.62	281508	남해읍 아산리 25-5	폐기	2021.06.30.
25	도근점	174	지역	중부	148959.58	281576.1	남해읍 서변리 65-26	폐기	2021.06.30.
26	도근점	186	지역	중부	150778.31	281534.27	남해읍 심천리 832-2	폐기	2021.06.30.
27	도근점	187	지역	중부	150828.32	281401.81	남해읍 심천리 1186	폐기	2021.06.30.
28	도근점	188	지역	중부	150850.03	281221.08	남해읍 심천리 1115-1	폐기	2021.06.30.
29	도근점	189	지역	중부	150898.84	281139.85	남해읍 심천리 1130	폐기	2021.06.30.
30	도근점	190	지역	중부	150798.81	281143.42	남해읍 심천리 1117-3	폐기	2021.06.30.
31	도근점	191	지역	중부	150740.42	281230.25	남해읍 심천리 1106	폐기	2021.06.30.
32	도근점	192	지역	중부	150683.92	281334.25	남해읍 심천리 1082	폐기	2021.06.30.
33	도근점	193	지역	중부	150587.88	281465.97	남해읍 심천리 1074	폐기	2021.06.30.
34	도근점	194	지역	중부	150550.74	281648.6	남해읍 심천리 1074	폐기	2021.06.30.
35	도근점	195	지역	중부	150376.31	281718.68	남해읍 심천리 910-5	폐기	2021.06.30.
36	도근점	208	지역	중부	150733.15	281668.03	남해읍 심천리 848-1	폐기	2021.06.30.
37	도근점	209	지역	중부	150607.59	281685.33	남해읍 심천리 952-2	폐기	2021.06.30.
38	도근점	210	지역	중부	150386.69	281726.24	남해읍 심천리 1031	폐기	2021.06.30.
39	도근점	211	지역	중부	150202.52	281732.95	남해읍 심천리 784-4	폐기	2021.06.30.
40	도근점	213	지역	중부	149069.12	282808.64	남해읍 남변리 645-25	폐기	2021.06.30.
41	도근점	214	지역	중부	149206.05	282928.19	남해읍 남변리 138-2	폐기	2021.06.30.
42	도근점	231	지역	중부	147214.5	281877.55	남해읍 평리 376	폐기	2021.06.30.
43	도근점	232	지역	중부	147157.64	281993.31	남해읍 평리 1604	폐기	2021.06.30.
44	도근점	233	지역	중부	147171.95	282136.64	평리 1604	폐기	2021.06.30.
45	도근점	234	지역	중부	147211.09	282257.57	평리 348-2	폐기	2021.06.30.
46	도근점	236	지역	중부	147334.72	282444.02	남해읍 평리 328-2	폐기	2021.06.30.
47	도근점	237	지역	중부	147414.01	282556.63	남해읍 평리 271	폐기	2021.06.30.
48	도근점	238	지역	중부	147469.74	282625.86	남해읍 평리 188-6	폐기	2021.06.30.
49	도근점	239	지역	중부	147510.38	282695.16	남해읍 평리 190-2	폐기	2021.06.30.
50	도근점	240	지역	중부	147510.49	282782.43	남해읍 평리 139-2	폐기	2021.06.30.
51	도근점	250	지역	중부	147596.31	283617.02	남해읍 입현리 931-6	폐기	2021.06.30.
52	도근점	266	지역	중부	147787.15	281772.98	남해읍 평리 948-1	폐기	2021.06.30.
53	도근점	303	지역	중부	148221.4	283333.81	남해읍 입현리 1274-4	폐기	2021.06.30.
54	도근점	315	지역	중부	148393.1	284671.9	남해읍 입현리 2-1	폐기	2021.06.30.
55	도근점	325	지역	중부	151100.28	282721.38	남해읍 심천리 86	폐기	2021.06.30.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원점	Y좌표	토지소재지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56	도근점	329	지역	중부	150259.53	281744.32	남해읍 차산리 786-10	폐기	2021.06.30.
57	도근점	341	지역	중부	150438.5	281842.43	남해읍 심천리	폐기	2021.06.30.
58	도근점	342	지역	중부	150548.81	281917.02	남해읍 심천리	폐기	2021.06.30.
59	도근점	343	지역	중부	150554.63	281995.72	남해읍 심천리	폐기	2021.06.30.
60	도근점	344	지역	중부	150580.77	282081.89	남해읍 심천리	폐기	2021.06.30.
61	도근점	345	지역	중부	150520.59	282185.52	남해읍 심천리	폐기	2021.06.30.
62	도근점	346	지역	중부	150582.35	282267.42	남해읍 심천리	폐기	2021.06.30.
63	도근점	347	지역	중부	150558.45	282372.97	남해읍 심천리	폐기	2021.06.30.
64	도근점	348	지역	중부	150622.66	282500.02	남해읍 심천리	폐기	2021.06.30.
65	도근점	350	지역	중부	150423.94	282341.91	남해읍 차산리	폐기	2021.06.30.
66	도근점	351	지역	중부	150333.95	282213.55	남해읍 차산리	폐기	2021.06.30.
67	도근점	358	지역	중부	147830.68	283347.37	남해읍 입현리	폐기	2021.06.30.
68	도근점	360	지역	중부	148015.02	283250.11	남해읍 입현리	폐기	2021.06.30.
69	도근점	361	지역	중부	148094.77	283250.99	남해읍 입현리 1252-1	폐기	2021.06.30.
70	도근점	423	지역	중부	149099.7	282383.38	남해읍 북변리 49-1	폐기	2021.06.30.
71	도근점	436	지역	중부	147170.33	281889.75	남해읍 평리 산260-1	폐기	2021.06.30.
72	도근점	449	지역	중부	148523.22	282606.79	남해읍 입현리 1604	폐기	2021.06.30.
73	도근점	452	지역	중부	149778.11	282726.4	남해읍 차산리 20번지	폐기	2021.06.30.
74	도근점	453	지역	중부	149897.24	282707.01	남해읍 차산리 20번지	폐기	2021.06.30.
75	도근점	457	지역	중부	150038.8	282546.42	남해읍 차산리 200-1	폐기	2021.06.30.
76	도근점	458	지역	중부	150142.75	282614.06	남해읍 차산리 380	폐기	2021.06.30.
77	도근점	459	지역	중부	150666.04	281701.84	남해읍 심천리 955 - 1	폐기	2021.06.30.
78	도근점	481	지역	중부	149117.79	281364.69	남해읍 아산리 309 - 3	폐기	2021.06.30.
79	도근점	482	지역	중부	149068.36	281379.64	남해읍 아산리 314	폐기	2021.06.30.
80	도근점	483	지역	중부	149041.5	281379.84	남해읍 서변리 318 - 2	폐기	2021.06.30.
81	도근점	484	지역	중부	149004.67	281399.17	남해읍 서변리 317 - 3	폐기	2021.06.30.
82	도근점	485	지역	중부	148941.5	281403.05	남해읍 서변리 286 - 3	폐기	2021.06.30.
83	도근점	486	지역	중부	148868.96	281399.14	남해읍 서변리 282 - 5	폐기	2021.06.30.
84	도근점	487	지역	중부	148864.76	281319.11	남해읍 서변리 271 - 1	폐기	2021.06.30.
85	도근점	492	지역	중부	148622.47	282348.09	남해읍 남변리 532 - 6	폐기	2021.06.30.
86	도근점	493	지역	중부	148525.32	282475.39	남해읍 남변리 645 - 1	폐기	2021.06.30.
87	도근점	497	지역	중부	148347.35	283009.69	남해읍 입현리1370 - 3	폐기	2021.06.30.
88	도근점	501	지역	중부	148651.25	281797.94	남해읍 서변리 492	폐기	2021.06.30.
89	도근점	510	지역	중부	148966.18	281513.89	남해읍 서변리 67 - 17	폐기	2021.06.30.
90	도근점	511	지역	중부	148874.96	281524.64	남해읍 서변리 69 - 1	폐기	2021.06.30.
91	도근점	512	지역	중부	148839.25	281524.22	남해읍 서변리 491	폐기	2021.06.30.
92	도근점	513	지역	중부	148871.98	281458.53	남해읍 서변리 282 - 5	폐기	2021.06.30.
93	도근점	532	지역	중부	150038.77	282545.99	남해읍 차산리 20	폐기	2021.06.30.
94	도근점	533	지역	중부	149891.97	282424.02	남해읍 차산리 757 - 2	폐기	2021.06.30.
95	도근점	534	지역	중부	149995.75	282286.46	남해읍 차산리 759 - 5	폐기	2021.06.30.
96	도근점	535	지역	중부	150072.18	282165.83	남해읍 차산리 825	폐기	2021.06.30.
97	도근점	536	지역	중부	150210.45	282028.78	남해읍 차산리 586 - 1	폐기	2021.06.30.
98	도근점	537	지역	중부	150341.23	281844.25	남해읍 차산리 475	폐기	2021.06.30.
99	도근점	538	지역	중부	150514.51	281771.71	남해읍 심천리 226	폐기	2021.06.30.
100	도근점	539	지역	중부	150666.19	281702.46	남해읍 심천리 955 - 1	폐기	2021.06.30.
101	도근점	542	지역	중부	149223.3	281133.15	남해읍 아산리 330 - 1	폐기	2021.06.30.
102	도근점	543	지역	중부	149323.37	281122.16	남해읍 아산리 1432	폐기	2021.06.30.
103	도근점	544	지역	중부	149307.69	281162.69	남해읍 아산리 1421 - 4	폐기	2021.06.30.
104	도근점	549	지역	중부	149192.87	281413.5	남해읍 아산리 355	폐기	2021.06.30.
105	도근점	550	지역	중부	149238.79	281400.84		폐기	2021.06.30.
106	도근점	555	지역	중부	148874.51	281760.66	남해읍 서변리 145 - 5	폐기	2021.06.30.
107	도근점	556	지역	중부	148746.35	281732.76	남해읍 서변리 491	폐기	2021.06.30.
108	도근점	557	지역	중부	148828.92	281761.99	남해읍 서변리 490 - 10	폐기	2021.06.30.
109	도근점	561	지역	중부	148834.21	281840.81	남해읍 서변리 498	폐기	2021.06.30.
110	도근점	607	지역	중부	147766.21	280349.94	남해읍평현리 1414 - 6	폐기	2021.06.30.
111	도근점	1003	지역	중부	145201.71	287129.43	이동면 무림리 1133-3	폐기	2021.06.30.
112	도근점	1004	지역	중부	145210.94	287179.15	이동면 무림리 1220-8	폐기	2021.06.30.
113	도근점	1009	지역	중부	145085.54	287282.9	이동면 무림리 1144	폐기	2021.06.30.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원점	Y좌표	토지소재지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114	도근점	1011	지역	중부	145001.2	287352.38	이동면 무림리 1026-2	폐기	2021.06.30.
115	도근점	1014	지역	중부	144979.61	287341.68	이동면 무림리 929-1	폐기	2021.06.30.
116	도근점	1022	지역	중부	148007.47	284904.05	이동면 초음리 620	폐기	2021.06.30.
117	도근점	1029	지역	중부	147347.94	284634.12	이동면 초음리 850-1	폐기	2021.06.30.
118	도근점	1033	지역	중부	147160.29	284616.29	이동면 초음리 850-4	폐기	2021.06.30.
119	도근점	1034	지역	중부	147052.52	284656.17	이동면 초음리 891	폐기	2021.06.30.
120	도근점	1035	지역	중부	147114.02	284724.72	이동면 초음리 886	폐기	2021.06.30.
121	도근점	1039	지역	중부	147384.55	285007.06	이동면 초음리 791	폐기	2021.06.30.
122	도근점	1041	지역	중부	147474.38	285195.2	이동면 초음리 794	폐기	2021.06.30.
123	도근점	1042	지역	중부	147513.58	285296.55	이동면 초음리 800	폐기	2021.06.30.
124	도근점	1044	지역	중부	147677.7	285493.71	이동면 초음리 821	폐기	2021.06.30.
125	도근점	1045	지역	중부	147601.79	285573.54	이동면 초음리 820	폐기	2021.06.30.
126	도근점	1051	지역	중부	147127.95	285233.97	이동면 초음리 1056	폐기	2021.06.30.
127	도근점	1059	지역	중부	147246.82	285691.09	이동면 초음리 1778	폐기	2021.06.30.
128	도근점	1063	지역	중부	146997.13	285831.14	이동면 초음리 1964	폐기	2021.06.30.
129	도근점	1068	지역	중부	147441.99	285987.22	이동면 초음리 1116	폐기	2021.06.30.
130	도근점	1069	지역	중부	147562.65	286058.73	이동면 초음리 1005	폐기	2021.06.30.
131	도근점	1074	지역	중부	147627.29	285930.04	이동면 초음리 1011	폐기	2021.06.30.
132	도근점	1075	지역	중부	147654.31	285808.93	이동면 초음리 1016	폐기	2021.06.30.
133	도근점	1077	지역	중부	147680.66	285629.96	이동면 초음리 827	폐기	2021.06.30.
134	도근점	1078	지역	중부	147768.94	285617.15	이동면 초음리 458	폐기	2021.06.30.
135	도근점	1092	지역	중부	148184.02	285848.38	이동면 초음리 364	폐기	2021.06.30.
136	도근점	1093	지역	중부	148248.05	285761.6	이동면 초음리 363	폐기	2021.06.30.
137	도근점	1095	지역	중부	148392.26	285604.04	이동면 초음리 318	폐기	2021.06.30.
138	도근점	1098	지역	중부	148554.88	285328.62	이동면 초음리 230	폐기	2021.06.30.
139	도근점	1100	지역	중부	148603.03	285116.02	이동면 초음리 56	폐기	2021.06.30.
140	도근점	1105	지역	중부	148281.53	284924.53	이동면 초음리 16	폐기	2021.06.30.
141	도근점	1108	지역	중부	148233.08	285367.63	이동면 초음리 272	폐기	2021.06.30.
142	도근점	1111	지역	중부	147875.81	285122.36	이동면 초음리 726	폐기	2021.06.30.
143	도근점	1113	지역	중부	147636.96	284956.9	이동면 초음리 714	폐기	2021.06.30.
144	도근점	1118	지역	중부	147972.8	285314.92	이동면 초음리 261	폐기	2021.06.30.
145	도근점	1127	지역	중부	147540.7	285149.35	이동면 초음리 797	폐기	2021.06.30.
146	도근점	1129	지역	중부	146492.58	286058.17	이동면 다정리 15-1	폐기	2021.06.30.
147	도근점	1130	지역	중부	146445.45	285981.46	이동면 다정리 15-1	폐기	2021.06.30.
148	도근점	1132	지역	중부	146292.52	286122.64	이동면 다정리 15-10	폐기	2021.06.30.
149	도근점	1137	지역	중부	148451.84	285257.98	이동면 초음리 194	폐기	2021.06.30.
150	도근점	1139	지역	중부	148251.15	285118.67	이동면 초음리 75	폐기	2021.06.30.
151	도근점	1140	지역	중부	148146.21	285044.69	이동면 초음리 627	폐기	2021.06.30.
152	도근점	1141	지역	중부	148093.1	285141.62	이동면 초음리 257	폐기	2021.06.30.
153	도근점	1142	지역	중부	148190.89	285209.29	이동면 초음리 251	폐기	2021.06.30.
154	도근점	1149	지역	중부	147435.43	284817.87	이동면 초음리 876	폐기	2021.06.30.
155	도근점	1156	지역	중부	147843.42	285484.13	이동면 초음리 814	폐기	2021.06.30.
156	도근점	1157	지역	중부	147836.77	285612.51	이동면 초음리 459	폐기	2021.06.30.
157	도근점	1158	지역	중부	147916.21	285667.21	이동면 초음리 463	폐기	2021.06.30.
158	도근점	1160	지역	중부	148090.25	285783.75	이동면 초음리 474	폐기	2021.06.30.
159	도근점	1164	지역	중부	147448.51	285662.13	이동면 초음리 1030	폐기	2021.06.30.
160	도근점	1165	지역	중부	147443.49	285811.33	이동면 초음리 1132	폐기	2021.06.30.
161	도근점	1166	지역	중부	147441.36	285916.96	이동면 초음리 1127	폐기	2021.06.30.
162	도근점	1167	지역	중부	147333.52	285919.72	이동면 초음리 1789	폐기	2021.06.30.
163	도근점	1171	지역	중부	147241.3	285468.9	이동면 초음리 1485	폐기	2021.06.30.
164	도근점	1172	지역	중부	147227.31	285347.34	이동면 초음리 1711	폐기	2021.06.30.
165	도근점	1181	지역	중부	142380.02	285142.74	이동면 용소리 526	폐기	2021.06.30.
166	도근점	1185	지역	중부	142367.63	284559.44	이동면 용소리 390	폐기	2021.06.30.
167	도근점	1186	지역	중부	142333.75	284408.43	이동면 용소리 1298-1	폐기	2021.06.30.
168	도근점	1199	지역	중부	142722.62	284774.8	이동면 용소리 1571	폐기	2021.06.30.
169	도근점	1203	지역	중부	142210.88	284109.23	이동면 용소리 1281-9	폐기	2021.06.30.
170	도근점	1204	지역	중부	142059.37	283881.55	이동면 용소리 1585	폐기	2021.06.30.
171	도근점	1205	지역	중부	141947.27	283786.09	이동면 용소리 1585	폐기	2021.06.30.

남 해 군 공 보

(16) 제 696 호

2021년 7월 12일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원점	Y좌표	토지소재지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172	도근점	1206	지역	중부	142723.93	285916.21	이동면 화계리 557-3	폐기	2021.06.30.
173	도근점	1208	지역	중부	142781.66	285551.38	이동면 용소리 239	폐기	2021.06.30.
174	도근점	1215	지역	중부	142264.76	284770.25	이동면 용소리 393	폐기	2021.06.30.
175	도근점	1222	지역	중부	142350.27	285820.43	이동면 용소리 1251	폐기	2021.06.30.
176	도근점	1226	지역	중부	142726.2	285894.92	이동면 화계리 557-3	폐기	2021.06.30.
177	도근점	1230	지역	중부	142693.98	285661.95	이동면 용소리 104	폐기	2021.06.30.
178	도근점	1233	지역	중부	142466.28	285411.09	이동면 용소리 533-5	폐기	2021.06.30.
179	도근점	1235	지역	중부	142575.41	285327.98	이동면 용소리 530-13	폐기	2021.06.30.
180	도근점	1236	지역	중부	142466.31	285286.13	이동면 용소리 533-16	폐기	2021.06.30.
181	도근점	1239	지역	중부	142686.19	285056.56	이동면 용소리 533	폐기	2021.06.30.
182	도근점	1243	지역	중부	142429.22	284756.34	이동면 용소리 357	폐기	2021.06.30.
183	도근점	1244	지역	중부	142644.6	284740.4	이동면 용소리 337-1	폐기	2021.06.30.
184	도근점	1245	지역	중부	142554.15	284743.75	이동면 용소리 348	폐기	2021.06.30.
185	도근점	1248	지역	중부	142719.36	285738.8	이동면 용소리 85	폐기	2021.06.30.
186	도근점	1255	지역	중부	142539.14	286686.61	이동면 화계리 91-4	폐기	2021.06.30.
187	도근점	1259	지역	중부	142569.17	287304.83	이동면 신전리 818	폐기	2021.06.30.
188	도근점	1269	지역	중부	142473.71	286958.11	이동면 신전리 742	폐기	2021.06.30.
189	도근점	1270	지역	중부	142535.39	286860.95	이동면 신전리 743-3	폐기	2021.06.30.
190	도근점	1274	지역	중부	146417.53	284020.61	이동면 다정리 1751	폐기	2021.06.30.
191	도근점	1275	지역	중부	146540.5	284025.46	이동면 다정리 1755	폐기	2021.06.30.
192	도근점	1276	지역	중부	146546.96	283977.22	이동면 다정리 840	폐기	2021.06.30.
193	도근점	1278	지역	중부	146752.64	283883.07	이동면 다정리 833-3	폐기	2021.06.30.
194	도근점	1279	지역	중부	146881.42	283928.58	이동면 다정리 818	폐기	2021.06.30.
195	도근점	1280	지역	중부	147066.83	283960.07	이동면 다정리 818	폐기	2021.06.30.
196	도근점	1281	지역	중부	147195.03	283943.1	이동면 다정리 817	폐기	2021.06.30.
197	도근점	1282	지역	중부	147209.71	284038.24	이동면 다정리 852	폐기	2021.06.30.
198	도근점	1290	지역	중부	146576.49	284802.24	이동면 다정리 102	폐기	2021.06.30.
199	도근점	1298	지역	중부	146280.08	285574.06	이동면 다정리 624	폐기	2021.06.30.
200	도근점	1299	지역	중부	146246.01	285342.3	이동면 다정리 623	폐기	2021.06.30.
201	도근점	1300	지역	중부	146321.5	285065.76	이동면 다정리 583	폐기	2021.06.30.
202	도근점	1302	지역	중부	146395.5	284776.97	이동면 다정리 100	폐기	2021.06.30.
203	도근점	1303	지역	중부	146522.25	284867.88	이동면 다정리 100	폐기	2021.06.30.
204	도근점	1304	지역	중부	146721.5	284363.96	이동면 다정리 1763	폐기	2021.06.30.
205	도근점	1308	지역	중부	146396.45	284063.33	이동면 다정리 1751	폐기	2021.06.30.
206	도근점	1310	지역	중부	146637.43	284200.13	이동면 다정리 1751	폐기	2021.06.30.
207	도근점	1311	지역	중부	146686.62	284108.26	이동면 다정리 937	폐기	2021.06.30.
208	도근점	1312	지역	중부	146640.13	283981.54	이동면 다정리 840	폐기	2021.06.30.
209	도근점	1313	지역	중부	146733.27	284010.61	이동면 다정리 883	폐기	2021.06.30.
210	도근점	1315	지역	중부	146903.66	284018.68	이동면 다정리 840	폐기	2021.06.30.
211	도근점	1316	지역	중부	146903.58	284100.51	이동면 다정리 840	폐기	2021.06.30.
212	도근점	1319	지역	중부	146334.51	285277.19	이동면 다정리 621	폐기	2021.06.30.
213	도근점	1320	지역	중부	146424.53	285220.3	이동면 다정리 618	폐기	2021.06.30.
214	도근점	1321	지역	중부	146381.19	285151.91	이동면 다정리 618	폐기	2021.06.30.
215	도근점	1327	지역	중부	146647.26	284673.55	이동면 다정리 711-2	폐기	2021.06.30.
216	도근점	1329	지역	중부	146520.83	284869.88	이동면 다정리 620	폐기	2021.06.30.
217	도근점	1330	지역	중부	146395.55	284777.39	이동면 다정리 587-1	폐기	2021.06.30.
218	도근점	1331	지역	중부	146327.34	284867.6	이동면 다정리 564-3	폐기	2021.06.30.
219	도근점	1332	지역	중부	146288.19	284989.52	이동면 다정리 425-2	폐기	2021.06.30.
220	도근점	1333	지역	중부	146163.35	285118.39	이동면 다정리 459-5	폐기	2021.06.30.
221	도근점	1334	지역	중부	146247.05	285338.3	이동면 다정리 618	폐기	2021.06.30.
222	도근점	1352	지역	중부	146279.21	285858.71	이동면 다정리 92-4	폐기	2021.06.30.
223	도근점	1376	지역	중부	144893.42	286058.25	이동면 석평리 1120	폐기	2021.06.30.
224	도근점	1377	지역	중부	144977.08	286031.48	이동면 석평리 391-2	폐기	2021.06.30.
225	도근점	1378	지역	중부	145025.83	286014.81	이동면 석평리 397-1	폐기	2021.06.30.
226	도근점	1382	지역	중부	145320.38	285788.09	이동면 석평리 1107-3	폐기	2021.06.30.
227	도근점	1383	지역	중부	145156.19	286139.49	이동면 석평리 547-1	폐기	2021.06.30.
228	도근점	1384	지역	중부	145167.53	286387.2	이동면 석평리 473-1	폐기	2021.06.30.
229	도근점	1385	지역	중부	145263.49	286687.54	이동면 석평리 102	폐기	2021.06.30.

연번	종류	기준점명	좌표구분	원점	Y좌표	토지소재지	상세주소	설치구분	폐기일자
230	도근점	1401	지역	중부	143009.18	287452.82	이동면 신전리 562	폐기	2021.06.30.
231	도근점	1402	지역	중부	142895.33	287553.73	이동면 신전리 623-2	폐기	2021.06.30.
232	도근점	1403	지역	중부	142986.48	287648.46	이동면 신전리 394-1 구	폐기	2021.06.30.
233	도근점	1404	지역	중부	142920.43	287762.54	이동면 신전리 402-1 답	폐기	2021.06.30.
234	도근점	1423	지역	중부	146146.37	286225.71	이동면 석평리 822-1	폐기	2021.06.30.
235	도근점	1424	지역	중부	146254.92	286245.44	이동면 다정리 15-18	폐기	2021.06.30.
236	도근점	1425	지역	중부	146387.58	286218.46	이동면 다정리 15-5	폐기	2021.06.30.
237	도근점	1426	지역	중부	146494.06	286184.15	이동면 다정리 23	폐기	2021.06.30.
238	도근점	1427	지역	중부	146629.46	286077.34	이동면 다정리 1-1	폐기	2021.06.30.
239	도근점	1428	지역	중부	146750.18	286010.12	이동면 초음리 178-1	폐기	2021.06.30.
240	도근점	1429	지역	중부	146910.82	286045.55	이동면 초음리 178-3	폐기	2021.06.30.
241	도근점	1432	지역	중부	146629.46	146629.46	이동면 다정리 1-1	폐기	2021.06.30.
242	도근점	1433	지역	중부	146146.37	286225.71	이동면 석평리 822-1	폐기	2021.06.30.
243	도근점	1437	지역	중부	146084.09	286253.74	이동면 석평리 1115	폐기	2021.06.30.
244	도근점	1438	지역	중부	146146.07	286152.61	이동면 석평리 1117	폐기	2021.06.30.
245	도근점	1439	지역	중부	146239.94	286226.78	이동면 다정리 1785	폐기	2021.06.30.
246	도근점	1466	지역	중부	142695.09	285129.23	이동면 용소리 1564	폐기	2021.06.30.
247	도근점	1468	지역	중부	142689.04	285520.84	이동면 용소리 321 - 1	폐기	2021.06.30.
248	도근점	1469	지역	중부	142683.99	285669.23	이동면 용소리 1094	폐기	2021.06.30.
249	도근점	1470	지역	중부	142734.16	285828.72	이동면 화계리 418	폐기	2021.06.30.
250	도근점	1476	지역	중부	142771.3	286494.32	이동면 화계리 17 - 3	폐기	2021.06.30.
251	도근점	1484	지역	중부	142242.32	284301.49	이동면 용소리 산138 - 1	폐기	2021.06.30.
252	도근점	1485	지역	중부	142332.42	284410.59	이동면 용소리 산141 - 3	폐기	2021.06.30.
253	도근점	1487	지역	중부	142632.41	284851.83	이동면 용소리 1144 - 3	폐기	2021.06.30.
254	도근점	1498	지역	중부	142689.42	285520.72	이동면 용소리 321 - 1	폐기	2021.06.30.
255	도근점	1500	지역	중부	142667.07	286223.67	이동면 화계리 112 - 4	폐기	2021.06.30.
256	도근점	1501	지역	중부	142663.48	286351.63	이동면 화계리 135 - 2	폐기	2021.06.30.
257	도근점	1509	지역	중부	142695.42	285129.18	이동면 용소리 1564 - 9	폐기	2021.06.30.
258	도근점	1510	지역	중부	142725.64	285014.67	이동면 용소리 676	폐기	2021.06.30.
259	도근점	1521	지역	중부	143036.72	287919.19	이동면 신전리 산67 - 19	폐기	2021.06.30.
260	도근점	1534	지역	중부	145141.48	287581.78	이동면 무림리 1778	폐기	2021.06.30.
261	도근점	1536	지역	중부	145441.22	287350.21	이동면 무림리 1164 - 14	폐기	2021.06.30.
262	도근점	1542	지역	중부	146226.74	286069.31	이동면 다정리 1830	폐기	2021.06.30.
263	도근점	1546	지역	중부	146414.7	285519.97	이동면 다정리 1785	폐기	2021.06.30.
264	도근점	1551	지역	중부	146852.47	284707.88	이동면 다정리 705 - 1	폐기	2021.06.30.
265	도근점	1552	지역	중부	146873.86	284612.83	이동면 다정리 798 - 7	폐기	2021.06.30.
266	도근점	1553	지역	중부	146932.92	284438.92	이동면 다정리 894 - 3	폐기	2021.06.30.
267	도근점	1554	지역	중부	147020.83	284289.62	이동면 초음리 1621 - 9	폐기	2021.06.30.
268	도근점	1557	지역	중부	146776.7	284527.97	이동면 다정리 1801	폐기	2021.06.30.
269	도근점	1585	지역	중부	142218.46	284188.95	이동면 용소리 산124 - 5	폐기	2021.06.30.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936호

도시계획도로(중로3-4호, 남해공용터미널 옆)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도시계획도로(중로3-4호, 남해공용터미널 옆) 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5)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중로3-4호, 남해공용터미널 옆)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연 장 (m)	폭 (m)	비 고
도 로 명	중로 3-4호	85	12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2,172	231						
1	북변리	321-5	답	125	47	남해군					
2	북변리	323	답	2,047	184	남해군					

남해군 공고 제2021 - 93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한광*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소하천명		금장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남면 당항리 1288번지(604-1관련, 1112-9 인근)		
	면적	4 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1. 7. 1. ~ 2026. 6. 30.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1 - 943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별 시설 조례를 통합하여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제1조 ~ 제3조)
 - 시설물의 일반적인 사항
 - 나. 입장료 및 이용시간, 요금면제, 휴무일(제4조 ~ 제8조)
 -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다.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등(제9조 ~ 제22조)
 - 시설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7월 2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52, 팩스 055-860-374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전화 055-860-8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 시설물”이란 관광객 유치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해군이 설치·운영하는 공원, 캠핑장, 전시관, 체험관, 생활문화센터, 전망대, 휴게쉼터, 주차장 등의 시설물과 이와 연관되는 시설물 및 부수설비로서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문화·관광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시설물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이용시간) ①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매표 및 입장시간은 이용 개시 시간 30분 전부터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 ① 시설물을 입장(관람) 또는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입장(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시설물의 입장(관람)료 및 이용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탁받은 자가 주관

하여 제작·판매하는 기념품 등이나 체험 프로그램의 참가비 등은 위탁받은 자가 자율로 정한다.

③ 입장(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입장(관람) 및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관람)권 및 이용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성인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따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매표 당일에만 유효하다.

제7조(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물에 입장(관람) 또는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3. 남해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5. 그 밖에 군수가 입장(관람)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휴무일) ①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제9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도 문학의 섬 내 노도창작실의 이용허가(변경)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이용허가(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변경) 허가서를 처리 기간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공익에 부합할 때 신청순서에 따른다. 다만,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 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한 행사

제12조(이용료 등) ①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시설물의 이용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100분의 100
- 2. 군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이용 중지된 경우 : 100분의 100

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100분의 50

제13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100분의 100
- 2. 남해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 100분의 100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100분의 50

제14조(이용자의 설비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 3. 허위 또는 허가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제16조(손해배상) 이용(관람)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와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확인·조사결과 시설물의 운영 및 사업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3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 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3.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 4.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위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물의 일부를 위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준용)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이용허가,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2.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3.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4.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5. 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7. 남해군 동창선 다누리플랫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9.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10. 남해군 스페이스 미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1.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문화·관광 시설물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명칭	관련 시설물	위 치	비 고
힐링국민 여가캠핑장	데크, 화장실 등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79-14	
독일문화 체험센터	파독전시관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89-7	
원예예술촌	원예예술문화관과 그 부대시설	남해군 삼동면 예술길 39 일원	
이순신 순국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국광장: 바다광장, 위령탑, 각서공원 등 • 관음포광장: 리더십체험관, 이순신 밥상체험관, 이순신 인물체험공원, 안내광장 등 • 통합시설: 이순신 영상관,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83번길 100	
보물섬캠핑장	펜션, 방갈로, 게스트하우스	남해군 남면 남면로 1229번길 10-34	
서상 게스트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 게스트룸 2인실 1칸, 4인실 1칸, 12인실 1칸, 주방, 샤워실, 화장실, 탕비실, 기계·전기실 등 • 2층 : 게스트룸 10인실 1칸, 12인실 1칸, 샤워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1687번길 14(서상리 1316-5)	
물미해안 전망대	카페테리아, 판매점, 옥상전망대, 화장실, 데크, 주차장 등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720	
설리 스카이워크	카페테리아, 스카이워크, 화장실, 데크, 주차장 등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303번길 176	
남해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다목적홀, 강의실, 연습실, 사무실 등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2	
생활문화센터	연습실, 악기연습실, 다목적실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22	

시설명칭	관련 시설물	위 치	비 고
노도 문학의 섬	김만중문학관,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등) 노도문화관, 노도창작실, 상징조형물, 야외공원	남해군 상주면 노도길 73-34 일원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작가창작실, 다목적실, 체험실,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캠핑장 등	남해군 창선면 연곡로 13	
바래길 작은미술관	전시실	남해군 남면 남면로1739번길 46-1	
보물섬 레일파크	기차조형물, 조경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1 일원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레인보우 전망대(한옥누각) 1식 탐방로, 탐방로 연결데크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산34-20 일원	
남해각, 남해각 전망공원 보행로	연면적 : 1,277㎡ (지하1층, 지상2층, 옥상)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운영사무국, 옥상 지원시설(공연장, 주차장) 엘리베이터 타워, 트리탑웨이 (보행로)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4216일원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443-16 일원	
스페이스 미조	연면적 : 1,815㎡ 냉동창고 아카이브, 디자인스튜 디오, 다목적홀, 전시실, 운영사 무국, 예술가 기숙사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54일원	

[별표 2]

문화·관광 시설물 입장료(제6조 관련)

1. 입장(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시설 명칭		개 인			비 고
		일반	청소년 군 인	어린이	
과독전시관		1,000			
원예예술촌		5,000	3,000	1,500	
이순신 영상관	개인 (군민)	3,000 (2,000)	2,000 (1,500)	1,500 (1,000)	
	단체 (군민)	2,000 (1,000)	1,000 (1,000)	800 (500)	
김만중문학관		무료	무료	무료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전시실	2,000	1,500	1,000	
	물놀이장	5,000	5,000	5,000	
바래길 작은미술관		무료	무료	무료	

가. 기준 연령

- 일 반 : 만18세 이상
- 청소년 : 만12세 이상 만18세 미만
- 어린이 : 만 3세 이상 만12세 미만 (단, 물놀이장의 경우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으로 한다)

나. 단체(20명 이상) 입장료는 개인 입장료의 80% 범위 이내로 한다.

다. 면제대상의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별표 3]

문화·관광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1. 물미해안 전망대

가.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인	소인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개 인	3,000	2,000
	단 체	2,000	1,000

1) 소 인 :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

2) 대 인 : 만19세 이상

3)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나. 운영시간 : 09:00 ~ 18:00

2. 설리 스카이워크

가.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인	소인	비고
스카이워크	2,000	1,000	
스카이워크 그네	6,000	4,000	스카이워크 포함

1) 소 인 :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

2) 대 인 : 만19세 이상

나. 운영시간 : 09:00 ~ 21:00(스카이워크 그네는 18:00까지)

3.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구 분	대학생 이하		일 반		비 고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게스트룸 2인실 및 4인실	12,000	15,000	20,000	25,000	(단위:원)
게스트룸 10인실 및 12인실	10,000	13,000	17,000	18,000	

○ 성수기 : 7월~8월,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1인 1박 기준
 ○ 가족동반 만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 1박은 당일 14:00~익일 12:00까지

가. 이용료 반환기준

내 용		반환기준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료의 100분의 75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료의 100분의 50

4. 캠핑장 이용료

가. 보물섬캠핑장

1) 이용료

시 설 별	이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평 일 (일~목요일)	주말.공휴전일 (금,토,공휴전일)		
펜션동	4인실 (34m ²)	12,000	140,000	170,000	1일기준
펜션동	2인실 (20m ²)	65,000	80,000	120,000	
방갈로	4인실 (17m ²)	50,000	50,000	60,000	
텐트사이트	1개소/1대당	35,000	35,000	35,000	
게스트하우스	6인실 (23m ²)	1인 25,000			

※ 비수기 평일에 단체(20인 이상) 또는 장기체류자(2주이상)는 시설이용료의 30% 할인

단, 단체할인을 적용은 숙박시설 이용기준정원에 따름.

※ 숙박시설 사용료는 기준정원 초과시 1인당(중학생이상) 5,000원 추가징수

※ 1일 이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치 추가)

2)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나. 힐링국민여가 캠핑장

1) 이용료

시 설 별	사용기준	비 수 기		성 수 기 (7~8월)		비 고
		주 말 (공휴일)	주 중	주 말	주 중	
텐트사이트	대형 6x8	30,000	25,000	40,000	35,000	1일기준
텐트사이트	중형 6x6	20,000	15,000	30,000	25,000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까지 5,000원,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치 추가)

※ 텐트 사이트 1명(중학생 이상) 추가 시 1인당 10,000원의 추가요금 징수

2)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대상 및 반환기준	비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별표 4]

문화·관광시설 이용료(제12조 관련)

1. 이순신 순국공원 리더십체험관 이용료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4시간)	비 고
노량대원			1회	100,000원	1회 4시간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교육관	전승관		1회	20,000원	
	순국관		1회	20,000원	
	충무관		1회	20,000원	

※ 기본 이용시간 및 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 기본 이용시간 : 1회 4시간 기준
2. 이용시간 초과시 금액 산정방법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시간 미만	노량대원 20,000원 교육관 4,000원	1회 이용료의 20%를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노량대원 40,000원 교육관 8,000원	1회 이용료의 40%를 가산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노량대원 60,000원 교육관 12,000원	1회 이용료의 60%를 가산
3시간 이상	노량대원 100,000원 교육관 20,000원	1회 이용료의 100%를 가산

2.원예예술촌 이용료

시설명		규모(종류)	기준	금 액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원예 예술 문화 관	다목적교육관		236.4m ² (108석)	1회/3시간	60,000	72,000	·초과시간 추가요금 적용
	세미나실		64.4m ²	“	30,000	36,000	-1시간미만 :
	교육실 (2층)	1(한지)	51.1m ²	“	20,000	24,000	기본료의 20% 추가
		2(공예)	49.7m ²	“	20,000	24,000	-1시간이상 2시간 미만 :
		3(미술)	59.4m ²	“	20,000	24,000	기본료의 50% 추가
		4(특산)	59.4m ²	“	20,000	24,000	-2시간이상 :
상설교육장(2층)		302.4m ²	1일	70,000	84,000	기본료의 100% 추가 단, 예약자 있을 경우 초과사용불가	
옥외 시설	야외공연장			1회	30,000	36,000	
	원예거리 광장 등	결혼 등 행사		1회/3시간	100,000	120,000	초과 1시간당 30,000

3. 남해문화센터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비 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다목적홀	100,000	120,000	120,000	150,000	1. 이용기준(3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지하 연습실	30,000	40,000	40,000	60,000	

가. 이용가능시간: 09:00~21:00

나.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이용 불가

※ 주간에서 야간으로 초과 이용하는 경우 야간 이용료 기준으로 가산

다. 유료입장 대관의 경우 입장료 수입금의 10%와 이용료 중 높은 금액

4.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가. 강의실

(단위 : 원)

구분	시설면적 (m ²)	주 간	야 간	비 고	
다목적실	77.6	7,000	10,000	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연습실	1	41	3,000		4,500
	2	21	1,000		1,500
	3	21			
	4	22			
악기연습실	1	55	3,000		4,500
	2	25	1,000		1,500

- 1) 이용가능시간: 09:00~21:00(공휴일/일요일의 경우 18:00까지 운영)
- 2) 사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 적용

나. 사물함 이용료

구 분	기 준	금액(원)	비고
사물함 (대)	1개월	10,000	
사물함 (중)	1개월	6,000	
사물함 (소)	1개월	3,000	

5. 노도문학의 섬 이용료

가. 노도창작실

시설이용기간	기준	금 액(원)	비 고
30일 이상 ~ 40일 미만	1일	7,000	
40일 이상 ~ 50일 미만	1일	6,000	
50일 이상 ~ 60일 미만	1일	5,400	
60일 이상 ~ 90일 이내	1일	5,000	

나. 그 외 시설

구분	기준	금 액(원)	비 고
김만중문학관 전시실(2층)	1일	120,000	1. 이용기준(3시간/1회)
노도문화관	1회	100,000	
야외공원	1일	100,000	

다. 이용가능시간: 09:00~18:00(휴관일 이용불가)

라.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 사용시간	초과 사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사용 불가

6.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이용료

가. 캠핑장

(단위 : 원)

구분	비 성수기		성수기 (물놀이장 운영기간)		비 고
	주중 (일~목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주중 (일~목요일)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1박2일 (4인기준)	30,000	35,000	40,000	4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량제봉투(20ℓ) 1매 지급 •카라반 및 캠핑용 차량 5,000원 추가

1) 이용가능 시간 : 14:00~ 익일 11:00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 사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시 1박2일 사용료 부과

나. 그 외 시설

구분	기준	금 액(원)	비 고
전시실	1일	100,000	1. 사용기준(3시간/1회)
체험실	1회	100,000	
다목적실	1회	100,000	

1) 이용가능시간: 09:00~18:00(휴관일 이용불가)

2)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 사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이용 불가

7. 스페이스 미조 대관(이용)료 및 반환기준

가. 대관(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용도	기준	금 액	비 고
해봐요 미조	다목적홀	오전	40,000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종일 09:00 ~ 18:00 * 준비·철수기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오후	40,000	
		종일	80,000	
미조 홀 2	전시실	오전	40,000	
		오후	40,000	
		종일	80,000	
오픈스튜디오	창작스튜디오	1개월	250,000	* 공공요금 포함

나. 대관(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환불사유(환불 신청일)	환불기준	비고
시 설 이용료	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100퍼센트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100퍼센트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80퍼센트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70퍼센트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50퍼센트	

[별지 제1호서식]

문화·관광 시설물 이용허가(변경) 신청서

1.이용자	주 소				전화 번호	
	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		성 명 (대표자)		생년 월일	
2. 행사명 (이용목적)						
3.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대상 및 인원		명				
5. 이용시설명						
6. 비고		붙임 : 행사계획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노도창작실 이용허가(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용목적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비 고				
<p>「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p> <p>남해군수 귀하</p>				
<p>※ 첨부서류(이용허가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미 첨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구체적인 작품 구상과 집필 목적을 포함하는 창작활동 계획서 1부. (A4용지, 글자크기 14포인트 1000자 이상) 3. 약약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신청 자격

- 전문 문학 매체 또는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최근 3년 이내 작품 발간 실적이 있는 문인
- 김만중문학상 수상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작품 발간 실적이 있는 문인

※ 연간 2회 이상 또는 180일 이상 사용 불가

■ 대상 분야 : 번역 · 시 · 시조 · 소설 · 산문 · 아동문학 · 평론 · 희곡 등 문학 전 장르

[별지 제3호서식]

문화·관광 시설물 이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1. 이용자	주 소				전화 번호	
	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		성 명 (대표자)		생년 월일	
2. 행사명(이용목적)						
3.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대상 및 인원		명				
5. 이용 시설명						
6. 이용자 준수사항		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별지 제4호서식]

노도창작실 이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1. 이용자	주소		전화 번호	
	성명		생년 월일	
2. 이용목적				
3. 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 시설명				
5. 이용자 준수사항		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

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		성 명 (대표자)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관광해설 능 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남해군이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위탁(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input type="checkbox"/>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위탁관리 및 운영 종료 후 5년간 <input type="checkbox"/>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input type="checkbox"/>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관리위탁 및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계획서 1부.

남 해 군 수 귀 하

[붙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계획서

▣ 운영방침

-
-

▣ 세부추진계획

1.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
 -
2. 시설물 관광해설 및 홍보계획
 -
 -
3. 시설물 에너지사용 계획
 -
 -
4. 운영 재원 확보사항(통장사본 등)
 -
 -

관리운영자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 공고 제2021 - 951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70호	어류등양식 (가두리)	어류	고현 갈화	20,000	2021.07.05 2031.07.04 (10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17-38	강혜영 외3명(장정애, 김현숙, 이행수)	제71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71호	어류등양식 (가두리)	어류	고현 차면	20,000	2021.07.05 2031.07.04 (10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16번길 75-14	양한성 외2명(양한천, 이경점)	제72호 재개발

※ '21/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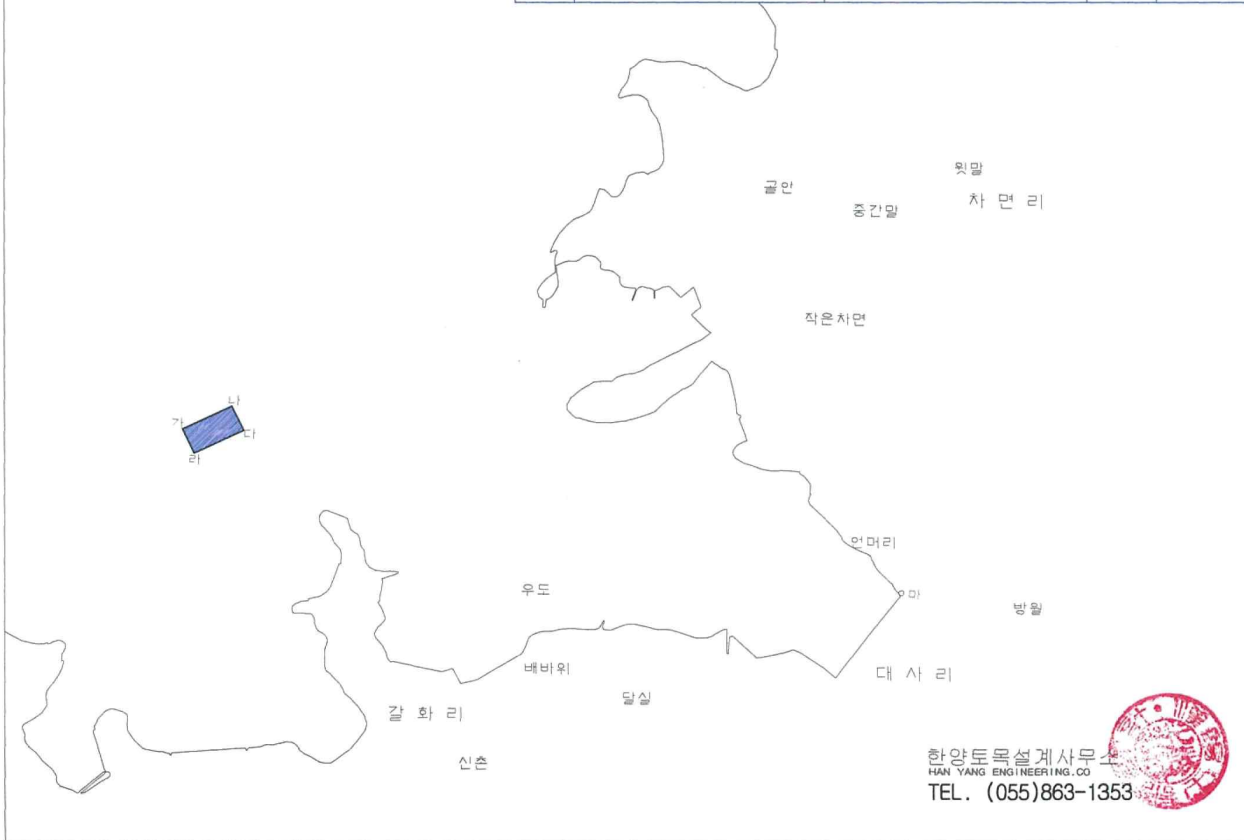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71호	어류등양식 (가두리)	어류	고현 갈화	20,000	2011.07.05 2021.07.04 (10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17-38	강혜영 외3명(장정애, 김현숙, 이행수)	
남해양식 제172호	어류등양식 (가두리)	어류	고현 차면	20,000	2011.07.05 2021.07.04 (10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16번길 75-14	양한성 외2명(양한천, 이경점)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어류 등 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가두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 34-54-15.02, E 127-51-51.73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0,000 m²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4-33.819	127-50-09.763	가-나 200
나	34-54-36.662	127-50-16.845	나-다 100
다	34-54-33.745	127-50-18.571	다-라 200
라	34-54-30.902	127-50-11.489	라-가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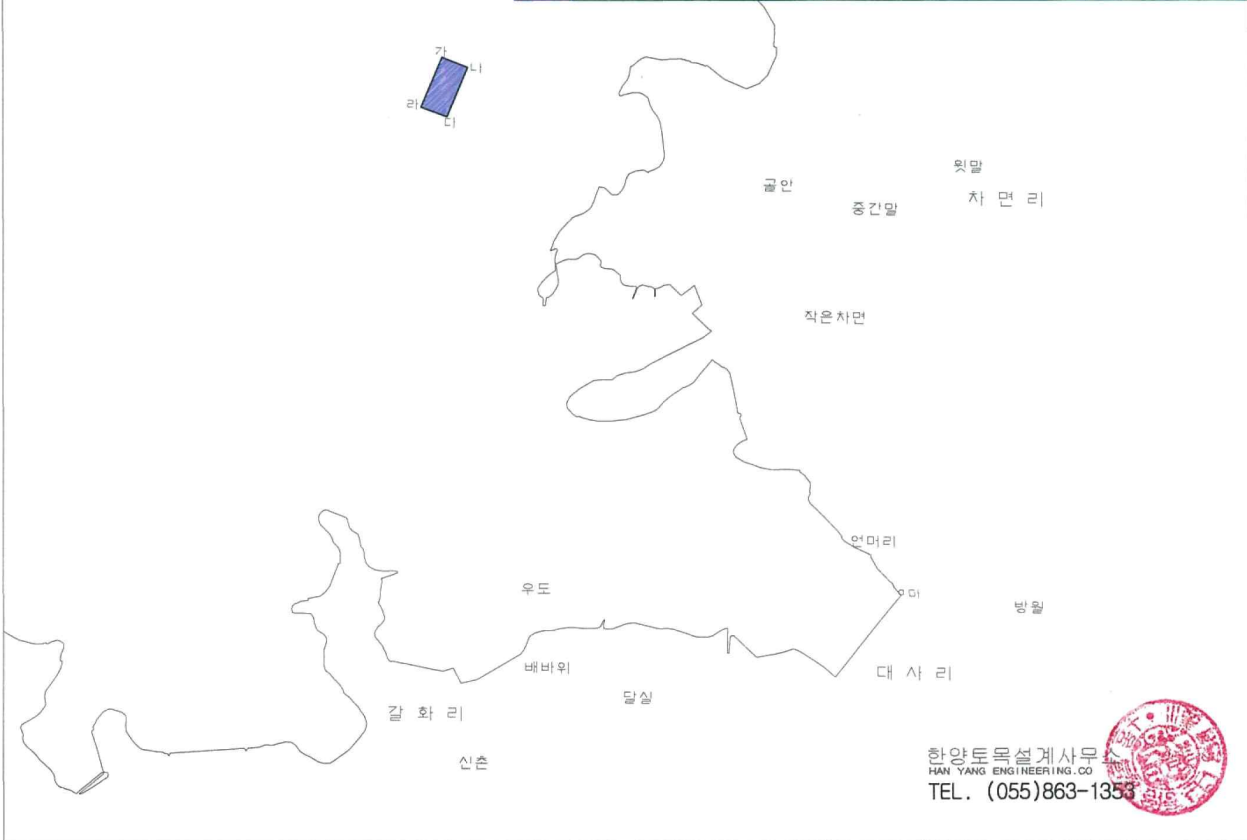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어류 등 양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가두리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 34-54-15.02, E 127-51-51.73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 6. 면 적 : 20,000 m²

축 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5-19.151	127-50-46.284	가-나 100
나	34-55-17.970	127-50-49.954	나-다 200
다	34-55-11.925	127-50-47.088	다-라 100
라	34-55-13.106	127-50-43.418	라-가 200



남해군 공고 제2021 - 956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572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창선 율도	40,000	2021.07.01 2028.08.22	진주시 향교로 17번길 3	김태수 외 1명(하도업)	

※ '21/22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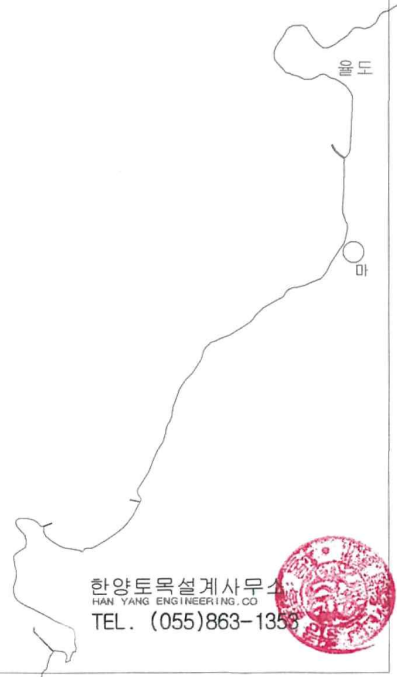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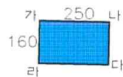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572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이동 초음	50,000	2018.08.23 2028.08.22 (10년)	진주시 향교로 17번길 3	김태수 외 1명(하도업)	제515호 대체 개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53-42.212, 127-59-27.423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 6. 면적 : 40,000 m²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3-54.214	127-57-39.153	가-나 250
나	34-53-54.121	127-57-48.998	나-다 160
다	34-53-48.930	127-57-48.926	다-라 250
라	34-53-49.022	127-57-39.082	라-가 16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8



남해군 공고 제2021 - 972호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임대조건) 현황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고합니다.

2021. 07. 05.

남 해 군 수

1. 2020년 4분기 임대차계약(임대조건) 신고 현황

신고일	임대주택 도로명주소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2021-06-3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97번길 50 (송림빌라) 201호	5,000,000	450,000
2021-06-3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921번길 36 1동	0	250,000
2021-06-1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495번길 90 (비치파라다이스) 101호	1,000,000	250,000
2021-06-1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두양로312번길 15 (남면 죽전리, 광명홈타운A) 203호	10,000,000	350,000
2021-05-10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1528번길 22-36 1동	1,000,000	0
2021-04-0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죽전리 248-1 (광명홈타운) B동 202호	2,500,000	400,000

남해군 공고 제2021-979호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부여 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도로 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부여의 세부기준) 규정에 의거 신규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6일

남 해 군 수

1.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7. 6. ~ 2021. 7. 20. (14일간)

2. 공고내용: 신규 도로명 부여(3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 및 현황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붙임의 「신규 도로명 부여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제출처: 남해군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 전 화 : 055-860-3641~4 (FAX : 055-860-3733)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

-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4. 도로명 부여 절차

기초조사· 통보·신청 등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주소정보 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고시 및 결과 통보
접수		14일 이상		주소정보 위원회 개최		도로명부여

붙임 도로명 부여 조서 1부. 끝.

1. 망운로45번길 도로명 부여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조서

구분	도로 길이 (m)	도로 폭 (m)	도로 위계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선형	행정 구역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신규	312	8	길	남해읍 아산리 409	남해읍 서변리 360-3	20	1-32	아래 참고	남해읍	망운로45번길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망운로45번길로 도로명 부여

- 도로구간 사진

위성 사진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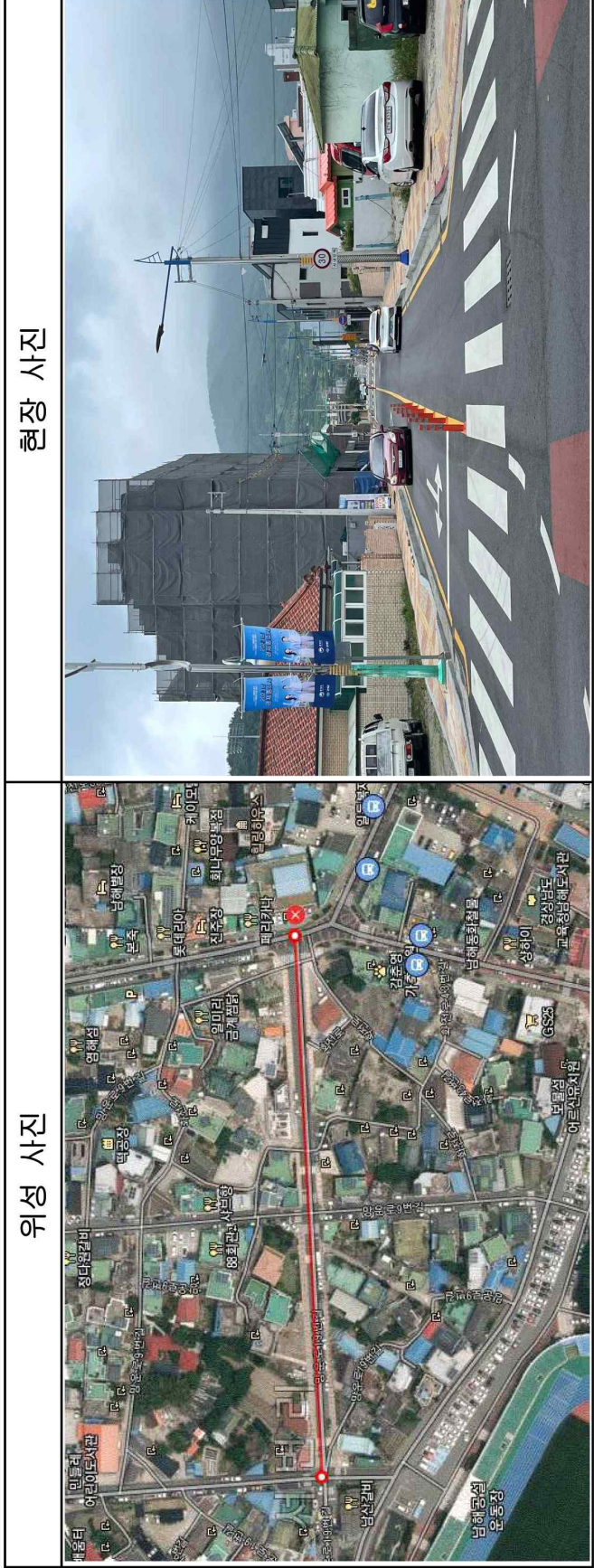


2. 화전로45번길 도로명 부여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조서

구분	도로 길이 (m)	도로 폭 (m)	도로 위계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선형	행정 구역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신규	238	8	길	남해읍 서변리 149-8	남해읍 서변리 69-1	20	1-24	아래 참고	남해읍	화전로45번길	화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화전로45번길로 도로명 부여

- 도로구간 사진



3. 화진로96번마길 도로명 부여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조서

구분	도로 길이 (m)	도로 폭 (m)	도로 위계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선형	행정 구역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신규	122	8	길	남해읍 북변리 266-16	남해읍 북변리 474-4	20	1-26	아래 참고	남해읍	화진로96번 마길	화진로96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화진로96번마길로 도로명 부여

- 도로구간 사진

위성 사진 	현장 사진 
---	--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서

성명 및 기관·단체		연락처	
주소			
예비 도로명			
희망 도로명	<i>주민이 희망하는 도로명 기재</i>		
제출사유 및 기타의견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1-981호

지명제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지명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거 지명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6일

남 해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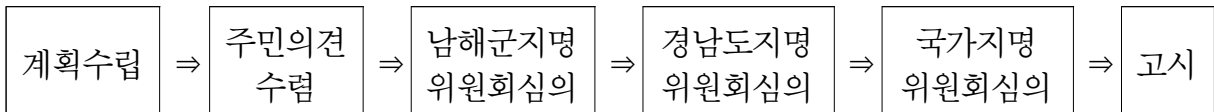
- 1.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7. 6. ~ 2021. 7. 20.(14일간)
- 2. 공고내용: 지명제정 1건(붙임 조서 참조)
- 3. 의견제출

붙임의 「지명제정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제출처: 남해군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 전 화 : 055-860-3641~4 (FAX : 055-860-3733)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
-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4. 지명제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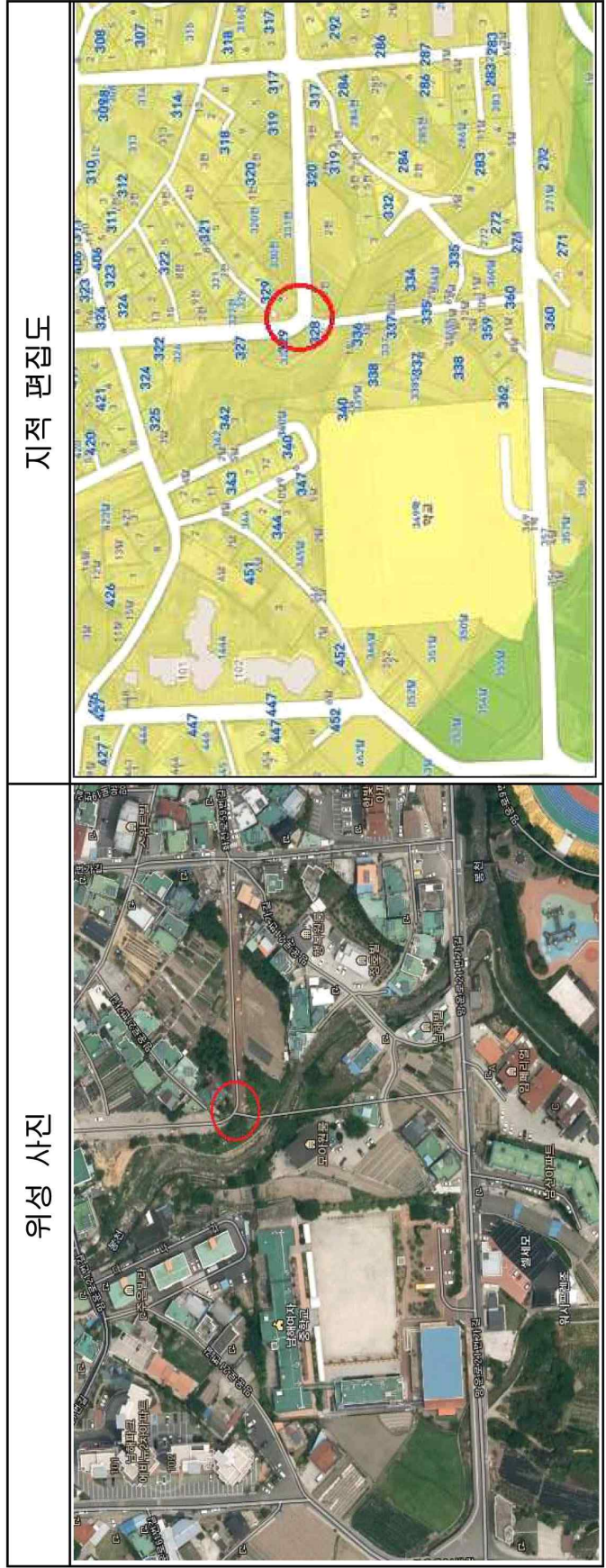


붙임 지명 제정(안) 조서 1부. 끝.

○ 지명 제정(안) 조서

구분	예비 지명	한자	지명 부여사유	위치	경도	위도	비고
제1안	배움교	배움橋	도시계획도로(남해군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남해여자중학교 아래) 개설공사 소교량으로 인근에 남해여자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즐거운 등하교길이 되어라는 의미로 배움교로 제안	남해읍 서변리 328-2~334-2	127도53분22초	34도50분9초	
제2안	망운교	望雲橋	남해군의 가장 높은 산이며 산봉우리가 구름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의미의 망운교로 제안				

○ 위치도



지명 제정에 대한 의견서

성명 및 기관·단체		연락처	
주소			
예비 지명			
희망 지명	주민이 희망하는 지명 기재		
제출사유 및 기타의견			

지명 제정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1 - 987호

남해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꽃별테마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꽃별테마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12.

남 해 군 수

-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꽃별테마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가.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꽃별테마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1)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09-2번지 일원
 - 2) 규 모 :
 -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 A = 93,614m²
 - 꽃별테마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A = 93,614m²
 - 나.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 : <붙임1>
 - 다. 관련도서 : 실음생략
 -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별첨>

3. 관계도서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4. 공람·공고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방법

가.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사항(2가지 방법 중 선택)

1) 남해군 도시건축과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단체(개인)는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남해군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꽃별테마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꽃별테마공원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상주면 양아리 209-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에 의한 개발	93,614		

■ 용도지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꽃별테마공원 개발진흥지구	○ 신설 A=93,614㎡	○ 꽃별테마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하여 개발진흥지구를 신규로 지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꽃별테마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상주면 양아리 209-2번지 일원	93,61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꽃별테마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A=93,614㎡	○ 지역 고유의 농업문화자원인 다랭이 논을 기반으로 지역자원의 테마화, 자연경관과 생태문화의 친환경적 개발 등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93,614	100.0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계	74,987	80.1	
	꽃빛정원	51,941	55.5	
	야생화원	13,472	14.4	
	잔디마당	3,030	3.2	
	벚파크	868	0.9	
	늘꽃마당	1,850	2.0	
	꽃별체험관	3,826	4.1	
공공시설 용지	소계	10,273	11.0	
	도로	3,797	4.1	
	주차장	6,038	6.4	
	저류지	438	0.5	
녹지용지		8,354	8.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7	8	보조 간선 도로	6,274	상주리 2207	양아리 산39-2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2.2.)	구역 내 L=91m

2)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상주면 양아리 142-2번지 일원	-	증)6,038	6,038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 신설 (A=6,038㎡)	○ 방문이용자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법정 주차면적 보다 상회하게 주차장 신설

3)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경관녹지	상주면 양아리 145번지 일원	-	증)5,220	5,220		
	B	녹지	완충녹지	상주면 양아리 1946번지 일원	-	증)229	229		
	C	녹지	완충녹지	상주면 양아리 165-6번지 일원	-	증)2,905	2,905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녹지	○ 신설 (A=5,220㎡)	○ 주차장 신설에 따른 사면안전성확보 및 자연적 환경보전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B	녹지	○ 신설 (A=229㎡)	○ 대상지 경계도로와의 완충기능을 위해 완충녹지 신설
C	녹지	○ 신설 (A=2,905㎡)	○ 대상지 경계도로와의 완충기능을 위해 완충녹지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89,817	-	-		
신설	-	I	11,258	1	상주면 양아리 142-2번지 일원	6,038	주차장
				2	상주면 양아리 145번지 일원	5,220	경관녹지
신설	-	II	12,444	1	상주면 양아리 125번지 일원	12,215	꽃빛정원
				2	상주면 양아리 1946번지 일원	229	완충녹지
신설	-	III	56,103	1	상주면 양아리 223-1번지 일원	13,472	야생화원
				2	상주면 양아리 167번지 일원	39,726	꽃빛정원
				3	상주면 양아리 165-6번지 일원	2,905	완충녹지
신설	-	IV	10,012	1	상주면 양아리 80번지 일원	868	팻파크
				2	상주면 양아리 78번지 일원	3,030	잔디마당
				3	상주면 양아리 243-1번지 일원	1,850	늘꽃마당
				4	상주면 양아리 241번지 일원	3,826	꽃별체험관
				5	상주면 양아리 235번지 일원	438	저류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 - 1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속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률	○ 120%이하	
		높이(층수)	○ 4층 이하	
-	IV - 4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률	○ 120%이하	
		높이(층수)	○ 4층 이하	

▣ 군관리계획 결정도

